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0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. . .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의외

1. 개정사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의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(제명, 안제1조~제3조)

3. 근거법규
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,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	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 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 ----- -----.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, 주민 및 기관·단체에 수여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	제2조(포상대상) 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 의장(이하 “의장“이라 한다)이 행한다.	제3조(포상권자) 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 -----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209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나. 제출 자 : 권태호 의원 외 4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2. 8.(화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)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
(제명, 안제1조~제3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